

<의안번호 제2006 - 13호>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 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## I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6년 4월 12일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2일

## II. 제안이유

-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, 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그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 시행됨으로써,
-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III. 주요내용

- 제명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함
-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9조)
-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 및 지급일을 규정함(안 제2조)
  - 의정 활동비 : 연 13,200 천원(월 1,100천원)
  - 월 정 수 당 : 연 16,992 천원(월 1,416천원)
  - 지 급 일 :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
- 출석일수 계산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)

-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여비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7조 별표1)
  -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의장·부의장 여비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

#### IV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및 물가 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의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,
-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로 인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따라서 회기수당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의 연 3,020만원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제시한 기초의원 권고 상한선인 3,700 ~ 4,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서 이것은 군의원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고 이에 부응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 별표7의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에 있어 의장·부의장과 의원간의 지급기준을 차등지급하던 것을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의장·부의장 지급기준액으로 상향조정 한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.

## V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 :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필요

다. 입법예고 : 불요

[별표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비 고

-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2]

국외여비지급 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미화불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	준 비 금		
			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·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	·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	1 등  정액	실비액	가등급 25	가등급 130	가등급 107	140	170	195
					나등급 25	나등급 90	나등급 78			
					다등급 25	다등급 72	다등급 58			
					라등급 25	라등급 62	라등급 49			
의 원	·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액  ·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 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	·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액  ·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	2 등  정액	실비액	가등급 20	가등급 114	가등급 81	130	155	180
					나등급 20	나등급 74	나등급 59			
					다등급 20	다등급 55	다등급 44			
					라등급 20	라등급 46	라등급 37			

비고 :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국가공무원 국외여비규정중 비고 1, 2에 의거 지급한다.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 등급 : 뉴욕, 런던, 파리, 스톡홀름, 동경, 홍콩

나. 나 등급 :

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일본, 파푸아뉴기니아

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워싱턴, 로스엔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트리니다토바고, 자메이카

(3) 유럽주 :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 
스위스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

- 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가봉, 중아프리카, 카메룬, 우간다, 코트디부와르, 니제르, 자이르, 수단

**다. 다 등급 :**

- 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인도, 터키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필리핀, 타이, 중화민국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
- 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아이티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칠레, 수리남
- (3) 유럽주 : 덴마크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희랍
- 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요르단, 바레인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이라크, 리비아, 이집트, 케냐, 나이지리아, 세네갈, 라이베리아, 모리타니아, 시에라리온, 이디오피아, 부르키나파소, 모리시어소

**라. 라 등급 :**

- 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인도네시아, 버마, 스리랑카, 히지, 네팔
- 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 엘살바도르, 도미니카공화국, 콜롬비아, 베네수엘라, 에쿠아도르, 페루, 볼리비아, 우루과이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
- (3) 유럽주 : 해당국가 없음
- 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레바논, 북예멘, 모로코, 튀니지, 르완다, 말라위, 스와질랜드, 가나, 소말리아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## [참 고]

### 지방자치법

第32條 (議員의 議政活動費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. <개정 1999.8.31, 2003.7.18, 2005.8.4>

1. 議政資料의 蒐集·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
2.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개정 2005.8.4>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8.4>

[全文改正 1994.3.16]

###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5에 의한 금액
  2. 여비 :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
 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[별표5]<개정 2003. 12. 18>

####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 활동비
시·도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월 900,000원 이내	월 200,000원 이내

[별표8]<개정 1999. 12. 31, 2003. 12. 18, 2005. 4. 27>

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분	항공임	일비	숙박비	식비	준비금			
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	
시·도	의 부의장	1등정액	40	205	133	150	180	210
	의 원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시·군·자치구	의 부의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	의 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비 고

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
2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7]<개정 1999. 12. 31, 2003. 12. 18, 2005. 4. 27>

**개 정 전**

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단위 : 원

지급기준액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
시·도	의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	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시·군·자치구	의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	의 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25,000	18,000



**비 고**

1.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내 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3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7]<개정 1999. 12. 31, 2003. 12. 18, 2005. 4. 27> **개정후(2006. 2. 8)**

**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**

(단위 : 원)

구 분 \ 지 급 기준액	철 도 운	선 박 운	항 운	공 운	자 동 차 운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 박 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
시·도의회 의원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0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0

**비 고**

1.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<의안번호 제2006 - 14호>

#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6년 4월 12일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2일

### II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 시행됨으로써,
-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「거창군의회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### III. 주요내용

- 제명 중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함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(「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(안 제3조)
  - 지방자치법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개정함(안 제1조)
  -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으로 개정함(안 제5조)
-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(안 제2조 제1항 2호, 제4조 제1항 1호, 2호)

## IV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해연도 “회의수당”에서 “의정활동비”로 전환함으로써,
  -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회기수당 1,600만원에서 의정활동비 2,640만원으로 1,04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으며,
  -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회기수당 800만원에서 의정활동비 1,320만원으로 52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음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## V. 참고사항

### 가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의 3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

나. 예산조치 :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필요

다. 입법예고 : 불요

## 지방자치법

第32條 (議員의 議政活動費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. <개정 1999.8.31, 2003.7.18, 2005.8.4>

1. 議政資料의 蒐集·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

2.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
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개정 2005.8.4>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8.4>

[全文改正 1994.3.16]

##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의3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